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심신장애’ 용어 일괄 개정〉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18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심신장애’ 용어 일괄 개정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보훈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4. 22.

다. 회 부 일 : 2025. 4.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심신장애’ 용어 일괄 개정

현행	개정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 한국은행법(제18조·제38조) · 한국조폐공사법(제17조) · 한국투자공사법(제23조) > ○ 운영위원, 금통위원, 부총재보, 임원의 해촉 사유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 한국은행법(제18조·제38조) · 한국조폐공사법(제17조) · 한국투자공사법(제23조) > ○ 운영위원, 금통위원, 부총재보, 임원의 해촉 사유 －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한국조폐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은행 부총재보, 한국조폐공사 및 한국투자공사의 임원의 해촉·해임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심신장애’에 대한 표현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해당 표현은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위원 등의 해임·해촉 요건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임·해촉 요건은 위원 등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요건이 다소 불명확하여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기존의 심신장애 유무의 판단을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심신장애 유무의 판단 주체에 대하여 ‘전문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반드시 이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¹⁾가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

한편, 「특별감찰관법」³⁾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⁴⁾ 등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해촉사유를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1)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의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단독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참고로 기획재정부도 위원 등의 직무수행 가능성은 법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의사의 진단 사항은 아니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특별감찰관법」 제14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려하여 개정안을 이와 같이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일한 취지의 일괄법률개정안이 우리 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11건이 발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참고자료)이므로 법률 용어의 통일적인 정비를 위하여 타 법률안의 심사 경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 행할 수 없게 된 때</u> 2. 3. (생략) ⑤ · ⑥ (생략)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 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2. 3.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 기 중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해 임되지 아니한다. 1. (생략) 2. <u>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3. (생략) ② (생략)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 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38조(부충재보의 해임) 총재는 부충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2. (생략)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생략)	제38조(부충재보의 해임) ----- ----- ----- -----. 1. 2. (현행과 같음)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조(임원의 해임) 공사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면권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17조(임원의 해임)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23조(임원의 신분보장) ----- ----- ----- -----.

현행	개정안
1. ~ 3. (생략) 4. <u>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때</u>	1. ~ 3. (현행과 같음) 4.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문의처
02)6788-5157

※ 참고자료 : “심신장애” 표현 일괄 개정 법안 목록(2025.4.)

구분	제명	소관 상임위
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003호)	법제사법위원회
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035호)	정무위원회
3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018호)	기획재정위원회
4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019호)	교육위원회
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037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002호)	국방위원회
7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042호)	행정안전위원회
8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038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034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0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033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043호)	환경노동위원회